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내취야”를 “내취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 중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가스기능장”을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표면처리기술사·위험물기능장·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화공·화약류제조·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를 “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하며, 같은 목 4) 중 “화약류제조·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가스기능사”를 “화약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표면처리산업기사·환경기능사·

위험물기능사·가스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로 한다.

별표 6의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에 한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하 “인터넷 교육”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 교육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의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

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출고량란의 “용도”를 “구매용도”로 한다.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
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u>내줘야</u> 한다.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u>2028년 12월 31일</u> -----.